

##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세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(이하 '총추위'라 한다)의 운영과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선정)** ① 총추위의 구성 및 총추위원의 선정에 관하여는 「단국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」을 따른다.

② 이사장은 재임 중인 총장의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총추위의 각 구성단위 대표에게 총추위 위원의 선정을 요청하여야한다. 다만, 총장이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요청하여야한다.

**제3조(위원 선정 결과통보)** ① 총추위 위원의 선정을 요청받은 총추위의 각 구성단위 대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총추위 위원을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장은 통보된 대표들을 총추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한다.

② 제1항이 정한 기일 내에 총추위 위원의 명단이 통보되지 않거나 총추위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위원 없이 총추위를 구성할 수 있다.

**제4조(위원장 등)** ① 본 운영세칙 제3조에 따라 총추위의 구성이 완료되면 이사장은 지체없이 첫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총추위의 위원장은 첫 회의 시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③ 위원장은 총추위를 대표하며, 총추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.

④ 총추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(회의 소집)** 총추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법인 이사장의 요구가 있거나, 총추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총추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총장후보자 초빙공고)** ① 총추위 위원장은 총추위가 최초로 소집된 후 15일 이내에 총장후보자 초빙공고를 실시한다. <개정 2023.2.10.>

② 총장후보자 초빙공고는 5일 이상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 <개정 2023.2.10.>

③ 총장후보대상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 1부
2. 대학발전계획서 1부
3. 평가항목별 자기평가서[별표 1] 1부
4. 최종 학력 증빙자료 1부
5. 상훈 및 포상 내역서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6. 서약서 1부
7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8. 추천서 1부
9. 그 밖에 총추위에서 요구하는 서류

**제8조(총장후보대상자의 자격 및 추천방법)** ① 총장후보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「단국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」을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총장후보대상자 추천 시 4개 이상(캠퍼스별 2개 이상) 단과대학 소속의 전임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추천인은 2인 이상의 총장후보대상자를 동시에 추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8.12.>

④ 총추위 위원은 「단국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추천을 할 수 없다.

**제9조(총장후보대상자의 심사)** ① 총추위는 총장후보자 공모기간이 종료된 후 8주 이내에 자격요건, 결격사유 유무, 제출구비서류의 제출 여부 등을 심사하여 총장후보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한다.

② 총추위는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검증을 위해 총장후보대상자에게 정책소견발표를 요구하고 질의·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기호는 추첨으로 정하며, 기호순으로 정책소견을 발표한다.

**제10조(총장후보자의 검증)** 총추위는 총장후보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본교 관련 부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.

1. 징계, 범죄사실통보 사항, 복무규정 위반, 검직허가 사항
2. 논문표절 등 연구진실성 및 연구비 관련 사항
3. 성희롱·성폭력 등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
4. 감사 관련 사항
5.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

**제11조(선거운동의 금지 등)**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비롯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총장후보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제외한다.

② 총장후보대상자가 제1항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총추위의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

제외하여야 한다.

③ 총추위 위원은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.

④ 위원장은 총추위 위원이 제3항을 위반하거나 추천과 관련한 비위사실, 품위손상, 직무태만,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총추위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
**제11조의2(교직원의 중립의무 등)** 팀장 이상의 보직자 및 기타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(기관·단체를 포함한다)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<신설 2023.2.10.>

**제12조(총장후보자의 선정방법)** ① 총추위 위원은 총장후보대상자의 제출 구비서류, 발전계획서의 구체성과 실효성, 정책소견발표 및 [별표1]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총장후보대상자를 심사한 후 추천할 후보 1인을 기표하고 총추위는 다수 득표순으로 총장후보자를 결정한다.

② 기표는 총장후보대상자들의 이름을 열거한 투표용지에 기표도구를 사용하고 비밀투표로 한다.

③ 동수득표자가 있어 총장후보자를 3인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수득표자를 놓고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로 결정한다.

**제13조(추천)** ① 총추위는 이사회에 3인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한다.

② 3인 이상의 총장후보자가 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총추위에서 3인 미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해당 결원을 추천할 수 있다.

③ 총추위가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선정순위를 표시하지 않고, 그 명단과 함께 관련 서류(후보자 등록현황, 서류 심사 결과 및 검증결과 포함)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)** ①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총추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추위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총추위 위원은 총장 후보 대상자의 심사, 검증, 추천 등에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.

#### 부칙(2019.6.14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2022.8.12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2.10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부내용	평가기준
경륜과 업적	학문적 업적과 평판	학력, 논문, 저서 등
	기타 업적	봉사활동, 대외활동, 국제교류 업적 등
경영 능력	발전계획	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
	조직관리	교내·외 주요보직 경력 의사소통 능력 조직혁신과 변화 관리 경험 등
	자원관리	재정건전성 강화 및 효율화 경험 대학발전 기여도(발전기금 기부(유치) 실적 등)
가치관 및 품행	건학이념의 존중	본교 창학이념과 교시의 구현 계획
	인간성	겸손, 타협, 인화, 포용력, 판단력, 공정성 등
	윤리의식 및 청렴성	총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윤리를 준수하고 행동하는 능력
	자기관리	적절한 일정계획과 건강관리를 통해 과도한 업무량, 외압, 스트레스 등을 이겨내고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